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03. 21(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02. 25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02. 25

라. 상정일자 : 2011. 03. 11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방종설 자치행정국장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1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

나.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표대상 중 계약정보 공개 대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제정 조례안은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 1억이상 공사·구매·용역,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1.1부터 1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개중)

○ 검토의견으로

-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2항 제8호 삭제 관련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감된 공사비에 대한 수시 공개 대상에서 삭제는 시민의 알권리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당초 계약의 변경 등이 있을시 추가로 공개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 제6호 중
“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문맥상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며,
-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표기 및 정비용어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신동수, 노현경위원
 - 계약 체결후 변경된 사항에 대한 공개를 삭제한 사유
 - 타시도 계약금액을 낮춰 공개 시행하는 단체

< 답 변 >

- 방종설 자치행정국장
 -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 경기도가 시행중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없음
- 나. 반 대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노현경, 차준택, 허회숙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6명 : 찬성 6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제1항제6호 중 “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하고
- 안 제6조제2항제8호의 삭제를 현행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시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p> <p>2. ~ 5. (생략)</p> <p>6.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p> <p>7. ~ 9. (생략)</p> <p>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7. <u>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내역</u></p> <p>8. 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p> <p>9. <u>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내역</u></p> <p>10. ~ 13. (생략)</p>	<p>제6조(정보의 공표)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따라 ----- ----- 1. -- <u>해당</u>----- ----- 2. ~ 5. (현행과 같음)</p> <p>6. ----- <u>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u> ----- 7. ~ 9.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따라 ----- ----- 1. ~ 6. (현행과 같음)</p> <p>7. <u>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u></p> <p><삭 제></p> <p><삭 제></p> <p>10. ~ 13.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보의 공표)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5. (현행과 같음)</p> <p>6. ----- <u>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u> -----</p> <p>7.~ 9.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6.(현행과 같음)</p> <p>7. (개정안과 같음)</p> <p>8.(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10.~13.(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동법시행령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를 삭제한다.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

제7조제1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에 <u>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u>시(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u> 및 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p>제6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u>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시의 <u>당해연도</u>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p> <p>2. ~ 5. (생략)</p> <p>6. 「지방공기업법」 및 <u>동법시행령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u></p> <p>7. ~ 9. (생략)</p> <p>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u>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조(목적)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인천광역시</u> -----</p> <p>제2조(정의) -----</p> <p>1.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u> -----</p> <p>제6조(정보의 공표)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u>----- -----<u>따라</u>-----</p> <p>1. -- <u>해당</u>-----</p> <p>2. ~ 5. (현행과 같음)</p> <p>6. ----- <u>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u> -----</p> <p>7. ~ 9.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따라</u> ----- -----</p>

현 행	개 정 안
<p>1. ~ 6. (생략)</p> <p>7. <u>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내역</u></p> <p>8. <u>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u></p> <p>9. <u>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내역</u></p> <p>10. ~ 13. (생략)</p> <p>제7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u>의하며</u>, 청구인의 요청에 <u>의하여</u>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8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u>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설치) <u>법 제12조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4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u>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정보공개청구자·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u></p> <p>8.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0. ~ 13. (현행과 같음)</p> <p>제7조 (공개방법) ① ----- ----- -----<u>따르며,</u> -----<u>따라</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 (비용의 부담) ----- ----- -----<u>「인천광역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u></p> <p>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설치)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u> ----- -----</p> <p>제14조 (수당 등) ----- ----- -----<u>범위에서</u> ----- -----<u>해당</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 -----<u>따라</u>----- ----- ----- -----</p> <p>② (현행과 같음)</p>